#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(안)

※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확정, 공지되는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17. 3.



# □ 모집단위별 모집인원

# 가. 수시

		입학	O.T.		정운	!내			정원외	
전형유형	형유형 모집학과		모집 인원	일반	목회자 추천	만학도 전형	국가 보훈 대상자	농어촌	기회균형 선발	장애인등 대상자
	신학과	20	16	-	13	2	1			
	재활상담심리학과	40	32	32	_	_	_		5	
학생부 (교과)	유아특수재활학과	40	32	32	_	_	_			00
(===17	사회복지학과	35	28	28	_	_	_	3		00
	재활복지학과	25	17	17	_	_	_			
실기위주	음악과	20	13	13	_	_	_			
	Л	180	138	122	13	2	1	8		00

## 나. 정시

		입학	모집	일반(경	정원내)		정원외	
전형유형	모 집 학 과	정원	인원	가군	다군	농어촌	기회균형 선발	장애인등 대상자
	신학과	20	4	-	4			
	재활상담심리학과	40	8	_	8		0	00
수능위주	유아특수재활학과	40	8	-	8	0		
	사회복지학과	35	7	_	7			
	재활복지학과	25	8	-	8			
실기위주	음악과	20	7	7				
	Й	180	42	7	35	0		00

#### □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

구 분	원서접수(인터넷)	면접일(실기)	합격자 발표
수시모집	2018.9.10(월) ~ 14(금)	실기(예능): 2018.10.10(수) 면접(인문): 2018.10.11(목)	2018.11.1.(목)
정시(가군)	2010 10 00 (E) 2010 1 2 (R)	실기(예능): 2019.1.9.(수)	0010 1 00 ( 51 )
정시(다군)	2018.12.29.(토)~2019.1.3.(목)	면접(인문): 2019.1.22(화)	2019.1.29.(화)

#### □ 지원자격

#### 가. 공통(모든 전형)

1) 고등학교 졸업자(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

#### 나. 만학도 전형

1) 30세 이상인자로서 기독교인 자(입학일자 기준)

#### 다. 목회자추천 전형

1) 기독교정신이 투철하여 소속교회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

#### 라. 국가보훈대상자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
- 1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 휴유의증환자, 지원대상자,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(단,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포함)
- 2) 세부자격: 보훈(지)청장이 발행하는 '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' 발급 대상자
- 3) 참전유공자 및 손자녀(독립유공자 제외)는 교육지원대상이 아님

#### 마. 농어촌학생 특별전형(정원외)

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①농어촌(읍,면)소재 초·중·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읍·면 지역에 거주한자
- ② 농어촌(읍·면) 소재 중·고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읍·면 지역에 거주한 자
- ※ '농어촌 소재지'란 [지방자치법]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[도서·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]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을 의미함
- ※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고) 출신자 제외

#### 바. 기회균형선발(정원외)

고등학교 졸업(예장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②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③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#### 사. 장애인등 대상자(정원외)

- 1) 고등학교 졸업자(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, 「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 법」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 자(국가보훈처 등록)

# □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### 가. 수시

전형		정원	정원 모집 모집단위별		최저학력	최저학력 선발		전형요소 반영비율			
유형	전형명	내외	인원	(전공포함) 모집인원	기준	방법	선발 비율	학생부	실기	면접	기타
학생부	일반		109	재활상담심리학과 유이특수재활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		일괄합산	100	60	-	40	_
(교과)	목회자추천	정원내	13	신학과		일괄합산	100	60	_	40	_
	만학도		2	신학과		일괄합산	100	60	_	40	_
	국가보훈 대상자		1	신학과		일괄합산	100	60	_	40	_
학생부 (교과)	농어촌학생		3	신학과 재활상담심리학과 유이특수재활학과 재활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		일괄합산	100	60	-	40	_
실기 위주				음악과	적용하지	일괄합산	100	20	80	_	_
	저소득층	정원외	5	신학과 재활상담심리학과 유이특수재활학과 재활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	야 마	일괄합산	100	60	-	40	_
실기 위주				음악과		일괄합산	100	20	80	_	_
학생부 (종합)	장애인등 대상자		00	신학과 재활상담심리학과 유이특수재활학과 재활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		일괄합산	100	_	_	100	_
실기	일반	정원내	13	00171		OLDIELLI	100	00	00		
위주	장애인등 대상자	정원외	00	음악과		일괄합산	100	20	80	_	_

### 나. 정시

전형		정원	모집		최저학력 선발		선발	한 전형요소 반영비율			율
유형	전형명	내외	인원	모집학과	기준	방법	비율	학생부	실기	면접	수능
수능 위주	일반 (인문)	정원내	35	신학과 재활상담심리학과 유이특수재활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		일괄합산	100	30	_	20	50
학생부 (종합)	장애인등 대상자	정원외	00	신학과, 재활상담심리학과 유이특수재활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	적용하지 않음	일괄합산	100	_	_	100	_
실기	일반 (예능)	정원내	7	00171			100	00	00		
위주	장애인등 대상자	정원외	00	음악과		일괄합산	100	20	80	_	_

※ 정시(정원외): 수시 미충원인원에 한해 선발

### □ 학년별 및 요소별 반영비율

모집	전형명	학년별 반영비율(%)				2소별  율(100%)
시기		1학년	2학년	3학년	교과	비교과
수시	모든 전형	20	30	50	80	20(출결)
정시(가)	일반(예능)	20	30	50	80	20(출결)
정시(다)	일반(인문)	20	30	50	80	20(출결)

### □ 학생부 반영교과

모집 시기	전형명	반영교과	점수산출 활용지표
수시	모든 전형	-1~3학년: 국어, 영어	석차등급
정시(가)	일반(예능)	-1~3학년: 국어, 영어	석차등급
정시(다)	일반(인문)	-1~3학년: 국어, 영어	석차등급

<sup>※</sup> 반영교과 내에 반영할 과목이 없을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함.

### □ 학생부가 없는 학생의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

전형대상	반영방법
2012년 이전졸업자	<ul> <li>과목별 계열석차가 없는 경우 학년별 계열석차를 적용</li> <li>학생부 제출자중 과목별 석차가 없는 경우 계열석차를 적용</li> <li>과목별 석차가 존재하는 경우 국어군, 외국어(영어, 일어) 학년 당 2과목을 선별하고 해당 과목의 석차백분율을 구하여 학생부교과 성적 백분위등급에 적용하여 성적 산출</li> </ul>
검정고시	- 검정 고시자는 성적표에 표시된 과목평균을 본교 자체기준의 등 급표에 의한 과목석차백분율에 적용하여 성적산출

### □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

	점수						
모집단위	활용 지표	국어 영어 /		사회/과학/직업탐구	한국사	비고	
일반전형(인문)	OIN ILU	30%	30%	20% (최고점 1과목)	20%		

### □ 면접고사

- 면접을 통하여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 시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
- 면접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
- 면접점수는 전형별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함

### □ 실기고사

전공분야	실 기 곡 명	반영비율	주의사항
피아노/성악	자유곡 2곡	각 50%	- 모든 실기 시험곡은 암보로 해야 한다.